

의사 및 표현의 자유의 촉진과 보장 특별보고관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up>1</sup>

문서번호: OL KOR 4/2019

2019년 11월 28일

대사께(Excellency),

우리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34/18 및 40/10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귀하께 연락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특보들은 일전에 대한민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에 관해 의견을 표명 (communication KOR 2/2018)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에 대해 환영 (communication KOR 4/2018)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아)은 비공식 영문 번역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본 서신을 통해 우리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려는 노력하며 국내법 체제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귀 대사의 정부가, 국제 인권법하에서 사상, 양심 및 신념의 자유 그리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예비적 반응에 주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연계하여 우리는 귀 대사의 정부로 하여금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국가가 규약상 권리에 국내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규약과 국내법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 대체복무제 법률(안)의 주요 요소

대체복무제 법률(안)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 당해 법률(안)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 제19 조하에서 해당 복무를 충족하는 개인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법률(안) 제1조와 제2 조 제1항 참고)

---

<sup>1</sup> [번역자 주] 본 서한은 원문상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 의역하였으며 2019년 12월 현재 법사위가 심사한 국방위원장(대안)의 법률(안)을 기준으로 조항 등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기에 원문의 조항이나 표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는 특보가 오해한 것은 아님을 밝힘.

## 제2장

법률(안) 제2장은 현역 군복무에서 대체복무로 편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대체복무는 해당 개인의 신청에 따른다. 대체복무 신청을 수용 혹은 거부하기 위해서 법률(안)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제7조).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의 승인 혹은 반려를 위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3조).

## 제3장

법률(안) 제3장은 심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교정시설, 구금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속 사무소 또는 공공 혹은 공익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서 진행된다(제17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해져 있다 (제19조).

해당 법은 나아가 복무기간의 연장 혹은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어지는 경고 (제24조) 등에 대한 상황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은 대체복무 편입의 취소 및 현역복무편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정한다.

## 제4장

제4장은 신청서 양식 또는 대체복무 편입 의사 표명서의 위조 (제27조) 그리고 위조 문서의 발급을 범죄화한다 (제28조).

## 부칙

법(안)의 부칙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병역법 제88조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편입을 규정하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호 법적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의견의 자유(제19조 제1항) 및 표현의 자유(제19조 제2항)과 함께 신념의 자유(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규약위)는 자유권규약에 따라 설치되어 규약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CCPR/C/GC/33 단락 13). 따라서 규약위의 해석은 규약 해석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erits) [2010] ICJ Rep 639 단락 66 참고). 이전 서신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체복무에 대한 권리는 규약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통보 및 일반견해 제22호에서 나타난다. *Jeong et al v Republic of Korea*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무적 군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강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원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 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수단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으나, 그러

한 대체복무는 군 관할지역 밖의 것이고 군의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대체복무는 징별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하여야 한다.”<sup>2</sup>

*Atasoy and Sartuk v Turkey*에서 규약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절대적 권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락 10.5 참고). 신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의견의 자유 역시 절대적이다 (CCPR/C/GC/34, 단락 9-10 참고). 표현의 자유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즉, 제한은 적법성, 정당한 목적, 필요최소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규약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서 규약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의무는 국가가 어떤 종류의 구분없이 모든 이에게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3</sup> 이 일반 의무는 제26조의 비차별 조항에 의해 보충된다: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 종교, ... 또는 기타의 의견, ...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그<sup>4</sup>

마지막으로 규약 제2조 제3항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효과적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는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를 수반한다. 보상을 넘어서, 이는 “반환, 재활 및 만족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사과, 공공 추도, 재발방지 보장 및 관련 법률과 관행의 편입 및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일 등을 수반한다.” (CCPR/C/21/Rev.1/Add.13 단락 16).

### 법률(안)이 가진 주요 우려사항

상정된 법률(안)은 몇몇 영역에 있어서 국제법 하에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의무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야기한다. 우리는 법률(안)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를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 제19조의 해석이 규약 제18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의 범위 안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재언급하며 국내법 내적 일치가 국제법과의 불일치를 정당화하지 못함을 상기시킨다(비엔나 협약 제27조와 이를 재확인한 자유권규약위원회 CCPR/C/21/Rev.1/Add.13, 단락4 참고).

더 나아가 헌법 제19조를 참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률(안)의 몇몇 요소들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비록 충돌해소원리가 국내법(예를 들어,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있으나 우리는 법률(안)의 적용이 국제인권기준과의 영구적인 긴장을

---

<sup>2</sup> 관보 제17558호 참고함

<sup>3</sup> 원문: ... that the State must respect and ensure respect of the rights recognised under the Covenant ...

<sup>4</sup> 원문: The

명문화하고 제도화할 것이라는 실제적 우려를 표명한다.

### 절차적 문제

첫째로 사용된 용어에 우려를 표한다. 법률(안) 그 어디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그러므로 단순히 법률(안)을 읽는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둘째로 대체복무제로의 편입신청을 결정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법률(안) 제13조 제2항은 대체복무제위원회가 개인 자신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권능은 추가적 조건에 놓여있지 않다. 이전에 지적되었듯이, 규약위가 정립한 기준은 신념이 진실되게 수용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체역위원회)에게 당사자의 진술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부여한다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법률(안)은 30세 이상 된 자를 대체복무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부칙 제3조 예외사항). 이런 구분을 만들어야 할 국내법적 이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 30세 이상은 병역에서 면제된다는 등이 아니라면 대체복무제자격으로서 연령 조건은 규약 제30조에 위배될 수 있다.

넷째로 제6조에서 재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은 여러 우려사항을 낳는다. 제25조를 언급하는 법률(안)? 제6조 제3항과 관련한 우려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라.<sup>5</sup> 제6조 제1항은 신청을 철회한 적 있는 자의 신청 재접수를 불가능하게 한다. 한 개인에게는 신청을 철회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잘 기록된 낙인이 있다.

###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봉사

규약위가 지적하였듯이 대체복무는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여야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과 화합될 수 있어야 한다. 교정시설, 구치소, 교정시설 및 구치소 부속 사무실에서 근무함이 공동체에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은 인정되나 우리는 구치소라는 시설을 독점적으로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서 특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투옥된 상황으로부터 복무를 수행하는 상황으로의 편입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17조 제2항 1목이 무기의 사용은 제외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sup>6</sup>

<sup>5</sup> 원문: For concerns relating to Article 6 (3) of the draft bill?, which makes reference to Article 25, see below.

<sup>6</sup>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

우리는 대체복무가 공동체에 있어서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보장하고 대체복무요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가 대체복무요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17조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권고한다.

제1항 대체복무요원은 공익을 위한 활동에 복무한다. 이런 활동은 무기의 사용이나 관리 또는 무력의 사용 혹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경우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제2항 대체복무요원의 배치에 대한 평가는 기관 및 장소를 포함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대체복무요원을 배치 받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처벌적 요소

법률(안)의 몇몇 측면은 처벌적 요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규약 제18조 제1항하의 대한민국이 지닌 국가의무에 위배된다 하겠다.

첫째로 법률(안)은 대체복무제가 36개월로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군복무보다 길다. 이 차이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정당화를 찾을 수 없다. 규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념에 기초한 모든 불평등한 처우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며 필요최소한(비례성)이어야만한다. 이를 위한 정당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 제26조를 위배할 뿐 아니라 제18조 제1항을 침해하는 처벌적 수단으로 고려된다.

둘째로 우리는 법률(안) 제25조에 대해서 특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대체복무제로의 편입을 취소하는 것이다. 취소를 규정하는 제25조 제1항의 7가지 상황 중에서 오직 하나만이 걱정스럽지 않다. 바로 7목의 자발적 취소이다. 나머지 1~6목은 개인이 절차규칙이나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위반하였으나 한 개인이 정당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경우에 취소되게끔 한다.

- 1목은 편입이 허위문서등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결정된 경우를 취소되도록 한다.<sup>7</sup>

위조문서사용을 포함하여 한 개인이 절차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일에서 배제되도록 하지 않는다. 법률(안) 제27조의 처벌조항은 1년 이상의

---

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sup>7</sup>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징역을 규정하므로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하게 심각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 2목은 편입이 한 개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되도록 한다.<sup>8</sup>

한 개인이 복무의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편입취소외에 적절한 대안이 있음을 환기한다. 예를 들어, 행정 혹은 노동법하의 징계 처분이 그러하다. 편입취소는 따라서 적절하지도 비례적인 대응도 아니라고 보인다.

- 3목은 편입이 복무연장의결과를 가진 경고 4회 이상이 있을 경우 취소되도록 한다. 법률(안) 제24조 제2항은 예를 들어 경고가 '다른 사람의 복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혹은 해당자가 '정치적 활동에 연루'된 경우 발부된다고 한다.<sup>9</sup>

법률(안) 제24조 제2항은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또한 참정권마저도 아마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규약 제19조 제3항, 제21조 및 제25조의 조건과 합치되어야 한다. 즉, 이들은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고 필요최소한이며 법률에 합치되어야만 한다.

첫째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못하게 막는 조치는 적법성 조건과 관련하여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자의적 의사결정의 위험이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적법성 조건은 어떤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가에 관련된 예견가능성의 의무를 수반한다. 법률(안)으로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 명확히 하기 어렵다.

필요성 및 비례의 원칙 조건에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재언급한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제한은 대체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충족시키기에 엄격하게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현재 문구는 너무 광범위하여 비례원칙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우려가 대체복무요원이 '타인의 복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의 근무태만을 선동'할 때 경고가 발부된다는 것에 대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이것이 단체노동쟁의 형식의 파업에 참여할 권리 방해로 구성하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취소사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법률(안)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경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한 인간에 대한 인정과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편입취소하는 결정은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sup>8</sup>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sup>9</sup>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제24조 4목은 편입이 한 개인이 형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취소되도록 한다.<sup>10</sup>

당해 형사범죄는 한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편입취소는 추가적인 처벌이라고 보이지 그 자가 대체복무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여하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반영하는 처사라 보이지 않는다.

- 제24조 5와 6목은 대한민국 출국 혹은 미귀국을 복무조건에 위배되도록 한다.<sup>11</sup>

전항에 대한 언급과 같이 이런 조건을 미준수함은 한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다. 그렇게 때문에 편입취소결심과 무관해야 한다.

요약하면 언급된 근거 어느 것도 어떤 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편입자동취소는 따라서 명백하게 규약 제18조 제1항에 배치된다.

### *과거 및 현재 침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부재*

우리는 법률에 과거 및 현재 진행중인 규약 제18조 및 제19조 침해사항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부재한 점에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3항의 의무에 따라 침해피해자에게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제공해야 함을 상기한다.

법률(안) 부칙에서 제2조는 기존 병역법 제88조 위반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개인들의 선고유예를 마련한다. 대체복무자격에 부합한다면 이미 집행된 형의 기간이 대체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확정이 국제인권법에 위배됨을 인정하는 것에 실패한다. 그러한 이유로 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확정과 선고가 부적법하고 그래왔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리고 유죄의 모든 효과를 소멸시켜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범죄로 옥고를 치렀던 기간을 대체복무 잔여 기간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대체복무제의 처벌적 성격을 추가로 강조한다. 형사적 형벌을 복역하는 일은 대체복무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전혀 비할 바 못된다. 우리는 귀 대사의 정부가 부칙 제2조에서 형사처벌의 본질과 대체복무제의 본질 사이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우리는 부칙 제2조에서 중단 지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

<sup>10</sup> [번역자 주] 제25조를 의미함.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sup>11</sup> [번역자 주] 제25조를 의미함.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입건(charges were brought against)이 이뤄지는 시점/기소가 이뤄진 시점에서부터 이미 정부당국자가 당사자의 신념의 자유 방해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해 둔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인에게 기소가/입건이 이뤄지는 시간을 참작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강조된 내용에 더하여 우리는 당사국이 반환, 보상을 통한 배상의 형식으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단지(조항을) 만족시키는 것이 별개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법률(안)의 채택은 당사국을 그러한 별개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별개의 의무를 미충족함은 별도의 규약위반을 성립시킨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2015년 최종견해를 포함해 규약위가 채택한 권고안을 재언급한다. 권고에서 규약위는 당사국에게 “군복무[의도적으로 병역을 쓰지 아니함.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병역을 사람들이 구분 못하므로]로부터 면제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범죄기록이 삭제되고 그들이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고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CCPR/C/KOR/CO/4, 단락45 참고).

끝으로 당사국은 규약 제2조 제1항하 일반의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인권의무를 구분없이 수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입법, 사법, 행정, 교육적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 공무원과 국가요원외에도 대중전반에 걸쳐 규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CCPR/C/21/Rev.1/Add. 13, 단락13참고). 따라서 당사국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그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연관된 부정적 낙인에 대항해야 한다.

인권이사회가 우리에게 위임한 권능에 따른 우리의 책무이기에 우리의 관심대상이된 모든 사건을 명료히 하고자 다음 사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제공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보 및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가 국제인권법하에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의무와 법률(안)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체복무제법의 채택을 넘어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효과적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중인 혹은 최근 채택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서 본 서신(communication) 및 귀 대사의 정부로부터 수신된 어떤 답변이라도 모두 서신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공개됩니다. 이후에 이들은 또한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적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대사께 우리의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 케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촉진과 보장 특별보고관

아흐메드 샤히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특별보고관